

정 권

학교법인 디아세인학원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5차원전면교육과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실력 있는 기독교적 인재를 양성하는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1999. 11. 19, 행정81422-1537)
-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DiA(Diamond Collar International Academy)세인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변경 1999. 11. 19, 행정81422-1537)
- 제3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인고등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 제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전북 완주군 화산면 운산리 110-1번지에 둔다.
(변경 1999. 11. 19, 행정81422-1537), (변경 2002. 12. 30, 행정 81422-1959)
- 제5조 (정관의 변경) 본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하고 변경된 사항은 14일 이내에 전라북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변경된 정관이 법령에 위반되어 도교육감에게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도교육감에게 보고 한다.(변경 2009.11.19. 교육지원과-13272), (변경 2012. 11. 17. 제4회)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 제6조 (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 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7조 (재산의 관리) ① 제 6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 제9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 1 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학교장이 편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 심의·의결로 확정하여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변경 2006. 12. 28, 행정과-14935)
④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다.
(신설 2006. 12. 28, 행정과-14935)
- 제1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세계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 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12조의 2 (예산 결산의 공개)(신설 2006. 12. 28, 행정과-14935)

-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서(부속명세서 포함)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서(부속명세서, 감사보고서 포함)을 관할청에 보고한다.
- ② 제9조제1항의 회계는 당해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시하되 예산서(부속명세서 포함)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 까지, 결산서(부속명세서, 감사보고서 포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한다.

제 3 절 예산, 결산 자문위원회

제13조 (예산.결산자문위원회의 설치) ~ 제17조 (위원회의 간사 등) (삭제 2006. 12. 28, 행정과-14935)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1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8인 (Headmaster 1인과 이사장 1인을 당연직 이사로 포함한다)
(변경 1999. 11. 19, 행정81422-1537), (변경 2002. 12. 30, 행정 81422-1959)
(변경 2009.11.19. 교육지원과-13272)
2. 감사 2인
3. 개방이사의 수는 2명으로 한다. (신설 2006. 12. 28, 행정과-14935)

제19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5년(단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변경 2002. 12. 30, 행정 81422-1959)
 2. 감사의 임기는 3년이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변경 2006. 12. 28, 행정과-14935)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06. 12. 28, 행정과-14935)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신청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 2 (개방이사의 선임) (2006. 12. 28, 행정과-14935)

- ① 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0조의3(개방이사의 자격)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④ 그 밖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개방이사 추천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신설)

제20조의 3(개방형이사의 자격) (2006. 12. 28, 행정과-14935)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건학이념 구현이 가능한 자 이어야 한다.

제20조의 4(추천위원회) (2006. 12. 28, 행정과-14935)

① 추천위원회는 세인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정수는 5인으로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다.

1. 학교운영위원회 추천위원 : 3명(교원위원 1명, 학부모위원 1명, 지역위원 1명)

2. 법인 임원 추천위원 : 2명

③ 기타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변경 1999. 11. 19, 행정81422-1537)

② 이사회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상 정수의 4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2000. 12. 04, 행정81422-11197)
(변경 2006. 12. 28, 행정과-14935)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변경 2000. 12. 04, 행정81422-11197)

⑤ 감사 중 1인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를 선임한다.

(신설 2006. 12. 28, 행정과-14935)

⑥ 5항의 감사 추천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 2(개방이사 선임)을 준용한다.

(신설 2006. 12. 28, 행정과-14935)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6. 12. 28, 행정과-14935)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자

제22조 (Headmaster와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일부개정 2020. 6. 17.)

② 이사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변경 2002. 12. 30, 행정 81422-1959)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④ Headmaster의 선출은 초대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회에 결의로 하고, 제2 부터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변경 2003. 2. 5, 행정81422-209)

제23조 (이사장과 Headmaster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Headmaster는 이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코자하는 5차원전면교육에 관한 장, 단기 발전의 계획을 연구제시하며 추진한다. (변경 1999. 11. 19, 행정81422-1537)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 (이사장 직무 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와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와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 (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 ②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 ③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신설)

제 2 절 이 사 회

제27조 (이사회와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원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와 개최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변경 2006. 12. 28, 행정과-14935)

② 이사회와 이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변경 2006. 12. 28, 행정과-14935)

③ 이사가 이사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더라도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춰진 시설에서 회의에 참석할 경우 참석인원으로 판단하고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2. 11. 17. 제4회)

제29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 (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1조 (이사회 소집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25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결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의 2 (사학윤리강령 준수) ① 이 법인은 법인 및 학교운영에 있어 “사학윤리강령”을 준수한다

② 이 법인 및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사학윤리위원회 활동에 협조하고 그 결정사항을 준수한다

제31조의 3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신설 2006. 12. 28, 행정과-14935)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수익 사업

제32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부동산 임대사업, 조립, 농장
2. 금전신탁
3. 삭제 (삭제 2009.11.19. 교육지원과-13272)
4. 의료 및 의약사업 (신설 2005. 1. 3, 행정과-8)

제33조 (수익사업의 명칭) 제32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어양영생당한의원을 경영한다.

(변경 2005. 1. 3, 행정과-8) (변경 2009.11.19. 교육지원과-13272)

제34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어양영생당한의원은 전북 익산시 하나로 418, 3층, 4층(어양동)에 둔다.

(변경 2005. 1. 3, 행정과-8) (변경 2009.11.19. 교육지원과-13272) (일부개정 2020. 6. 17.)

제35조 (관리인) ① 33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5 장 해산

제36조 (해산) 이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라북도교육감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변경 2009.11.19. 교육지원과-13272)

제37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라북도교육감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변경 2009.11.19. 교육지원과-13272)

제38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전라북도교육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 2009.11.19. 교육지원과-13272)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명

제39조 (임면) 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장과 교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삭제 1999. 11. 19, 행정81422-1537), (변경 2012. 11. 17. 제4회)
단, 그임기는 고등학교의 교장은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교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신설 2006. 12. 28, 행정과-14935), (변경 2012. 11. 17. 제4회)

②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교원을 신규 임용함에 있어서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 마감일 1월전 까지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학교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2. 28, 행정과-14935)

⑤ 정년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업담당 능력 및 건강 등을 참작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6. 12. 28, 행정과-14935)

⑥ (신설)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3. 학교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자가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변경 또는 친족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1호, 2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07.23.)

⑦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형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임용을 제한하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형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은 재직 교원도 당연 면직한다. (신설 2012. 11. 17. 제4회)

제39조의 1 (기간제교원) ①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제39조의 2(퇴직교원의 기간제 교원임용) (신설 2000. 12. 04, 행정81422-11197)

① 임면권자는 정년퇴직한 교원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거나,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년퇴직한 교원을 기간을 정하여 임용 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임면권자는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임용된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39조의 3(전형결과 공개) (신설 2006. 12. 28, 행정과-14935)

- ①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 17조를 준용한다.

제 2 관 신분보장

제40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 내지 제 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 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자녀(만8세 이하 취학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변경 2012. 11. 17. 제4회)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제41조(휴직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 40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치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 40조 제 2호 및 제 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 까지로 한다.
3. 제 40조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 40조 제 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 40조 제 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 40조 제 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
7. 제 40조 제 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 40조 제 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 40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42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제 40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 ④ 교원이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임면권자는 해당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신설 2012. 11. 17. 제4회)

- 제43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 4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 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 ② 제40조 제 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 ③ 제40조 제 2호 내지 제 4호와 제 6호 내지 제 8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 40조 제9호 내지 제 10호의 경우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 44조 (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및 학교현장이 정하는 교원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 ③ 제 1항 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④ 제 1항 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 한다. 다만, 제 1항 또는 제 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해제 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 ⑤ 임면권자는 제 2항 제 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 ⑥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 제 2항 제 1호와 제 2호 또는 제 1항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 2항 제 2호 또는 제 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⑧ 제 2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선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45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고난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46조 (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7조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48조 (명예퇴직)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는 정년 전에 자진하여 명예퇴직 할 수 있다.

제49조 (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대한 실시시기,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 (교원 정년) 교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 ① 교원 정년은 국가가 정한 교육공무원법상의 정년 규정에 따른다.

(변경 2003. 2. 5, 행정81422-209) (개정 2021.11.26.)

② (변경 2003. 2. 5, 행정81422-209) (삭제 2006. 12. 28, 행정과-14935)

③ 교원 정년의 기산은 생년월일로 하며 그 정년이 달한 생일이 속하는 학기의 말에 당면 퇴직된다.

④ (삭제 1999. 11. 19, 행정81422-1537)

제50조의 2 (행동강령) 교원 및 사무직원의 행동강령에 관하여는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제 3 관 교원 인사위원회

제51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면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변경 2006. 12. 28, 행정과-14935)

제52조 (인사위원회 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변경 2006. 12. 28, 행정과-14935)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변경 2006. 12. 28, 행정과-14935)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변경 2006. 12. 28, 행정과-14935)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06. 12. 28, 행정과-14935)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06. 12. 28, 행정과-14935)

제53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제54조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5조 (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이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심의 내용 중 특정인의 인사에 관계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6조 (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7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8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9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 중에서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1명 이상 포함 할 것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자가 아닐 것

④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59조의 2(외부임원의 임기 등)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학교법인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9조 4항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설 및 일부개정 2016.07.23.)

제60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1조 (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의무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2조 (제척 사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3조 (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 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제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일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4조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5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일부개정 2016.7.23.)

제66조 (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 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 ③ 임명권자가 제 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66조의 2(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그 사실을 임명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1. 17. 제4회)

제67조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공적,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8조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일부개정 2016.7.23.)

제69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70조 (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사무직원

제71조(자격) ①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21. 4. 23)

-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지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 ③ 재직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72조 (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근속승진,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 해제, 복직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하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변경 2002. 12. 30, 행정 81422-1959)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 ④ 기타 사무직원의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에 의한다.(신설 2021.4.23.)

제72조의 1 (근속승진) ① 임용권자는 학교소속 사무직원 중 당해 계급에서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고 근무실적이 양호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근속승진제에 의하여 각각 상위 직급으로 승진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2. 12. 30, 행정 81422-1959) (변경 2014. 02. 15. 제6회)

- ② 근속승진으로 승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정관의 정원 기준을 초과한 별도의 현원으로 관리한다. (신설 2002. 12. 30, 행정 81422-1959)

제72조의 2 (대우사무직원의 선발) 대우사무직원의 선발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 하되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2. 12. 30, 행정 81422-1959)

제73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변경 2002. 12. 30, 행정 81422-1959)

제74조의 1 (정년) ① 일반직원의 정년 및 정년연장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삽입 2002. 12. 30, 행정 81422-1959)

② 일반직원으로 정년에 달한 자는 그 정년이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74조의 2 (명예퇴직) ① 20년 이상 근속한 사립학교 사무직원 중 퇴직예정일 현재 정년 잔여기간 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자진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명예퇴직을 할 수 있다.

(삽입 2010. 8. 24, 교육지원-10393)

②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및 관할청의 지침을 준용한다.(개정 2021.4.23.)

제74조의3 (특별승진) ① 제74조의2 제1항에 의거 명예퇴직을 하는 자는 근무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특별승진을 할 수 있다. (삽입 2010. 8. 24, 교육지원-10393)

② 특별승진에 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삽입 2010. 8. 24, 교육지원-10393)

제75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변경 2002. 12. 30, 행정 81422-1959)

제76조 (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변경 2002. 12. 30, 행정 81422-1959)

제77조 (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78조 (법인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과를 두며, 과장은 참사 또는 부참사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고 등 학 교

제79조 (교장등) ① 고등학교에 교장 1인을 교감 1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0조 (하부조직) 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부참사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절 정 원

제81조 (정원) 법인 및 각급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 8 장 보 칩

제82조 (공고)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국민일보 신문에 공고한다.

제83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84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시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삭제 2005. 1. 3, 행정과-8)

직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주소
이사장	이광익	1953. 4. 21	4년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2가 41-1 7/4
이사	이종현	1950. 1. 5	4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17-7
이사	김진원	1939. 7. 5	4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2가 230-3
이사	박주삼	1955. 3. 28	2년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2동 607-14
이사	김자연	1959. 11. 20	2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40-48
이사	원동연	1954. 1. 12	4년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엑스포APT 109-303
이사	소강춘	1957. 8. 20	2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265
이사	강봉근	1950. 4. 7	2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35-23
감사	안복환	1957. 12. 1	2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2가 초원A101동
감사	최기호	1962. 8. 14	1년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 우성근영 A104동403

제 9 장 학교운영위원회

(신설 2000. 05. 26, 행정81422-10327)

제85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1조 제 1항에 의거 학교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치·경영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6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 32조 제 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학교규정의 제·개정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5.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6. 학교회계 예·결산에 관한 사항
- ② 법 제 32조 제 1항 제 5호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중 학생의 교육활동·수련활동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제 1항 제 4호의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7조 (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일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선출 절차, 기타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 이라한다.)으로 정한다.

제 88 조 (위원의 임기 및 개시일) ① 위원의 임기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89 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 90 조 (위원의 당연 퇴직)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변경 2005. 1. 3, 행정과-8)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및 전학·퇴학한 때.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 하였을 때
4.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② 제 1항 제 4호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한다.

제91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59조 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 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2조 (회의 및 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연4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93조 (소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전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94조 (건의사항처리) ①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② 건의사항 처리를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95조 (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의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96조 (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

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97조 (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장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신설 2000. 12. 04, 행정81422-11197)

제98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제4항에 의거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세인고등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99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세인고등학교안전공제회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 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사항
- ②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한다.
- ③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임·직원의 회의 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② 위원은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 ③ 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자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101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2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3조(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 당사자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이나 유선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할 수 있다.

제104조(회의개최) ① 회의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 개최한다.

- ② 분쟁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 ③ 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5조(위원의 제척)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

여할 수 없다.

제106조(심의 등 결과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 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 등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송 대행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폭행·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 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분쟁사안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인권 침해의 정도가 범죄 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당해 교원의 징계의결 등 인사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7조(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108조(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자격상실, 기타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 정관 중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행정 81422-1537)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행정 81422-10327)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행정 81422-11197)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행정 81422-1959)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행정81422-209)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행정 81422-504)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월 03일부터 시행한다.(행정과-8)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행정과-12359)

부 칙

제1조(임원 선임기간의 예외) (신설 2006. 12. 28, 행정과-14935)

개정 정관 시행일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는 제20조의 2 ④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원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06. 12. 28일부터 시행한다. (2006. 12. 28, 행정과-14935)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7.11.29일부터 시행한다. (2007.11.29. 교육지원과-12751)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9.11.19일부터 시행한다. (2009.11.19. 교육지원과-13272)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0.08.27일부터 시행한다. (2010.08.27. 교육지원과-10393)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1.12.20일부터 시행한다. (2011.12.20. 예산과-3274)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2012.11.17일부터 시행한다. (2012학년도 제4회 이사회의)

제2조(교감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시행 당시 재임 중인 교감의 임기는 2016년 11월 16일까지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4.2.15일부터 시행한다. (2013학년도 제6회 이사회의)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6.7.23일부터 시행한다. (2016학년도 제2회 이사회의)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0. 6. 17.일부터 시행한다. (2020학년도 제2회 이사회의)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1. 4. 23.일부터 시행한다. (2021학년도 제1회 이사회의)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1. 11. 26.일부터 시행한다. (2021학년도 제4회 이사회의)

(별표 1) 법인 일반직원 정원

총 계		1명
일반직계 1명	6급 또는 7급	1명

(별표 2) 학교 일반직원 정원 (세인고등학교)

총 계		4명
일반직계 4명	6급(교육행정)	1명
	7급(교육행정)	1명
	8급(교육행정)	1명
	8급(시설관리)	1명

(변경 2002. 12. 30, 행정 81422-1959 , 2003. 3. 25, 행정 81422-504)(변경 2014.2.15. 제6회)
(변경 2021.4.23.)